

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(제23조제2항 관련)

1. 기술인력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갖추어 것
 - 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 - 1) 안전
 - 2) 기계
 - 3) 전기
 - 4) 화공
 - 5) 산업위생 또는 보건위생
 - 6) 생물
 - 나. 가목1)부터 6)까지에 따른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 - 다. 가목1)부터 6)까지에 따른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
2.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할 것
3.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실을 확보할 것